부천시평생학습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04년 5월 6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4년 5월 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·제112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(2004년 5월13일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이해양)

□ 제안이유

- 평생학습센터소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우수하고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.
- 운영위원회 위원을 30인까지 확대하여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하는 등,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평생학습센터 소장의 자격기준을 현행 라급(8급 공무원 수준)에서 가급(5급 공무원 수준)으로 상향 조정함.(안 제13조제1호)
- 평생학습센터 소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 중 평생교육분야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함.(안 제13조제3호)
- 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을 15인에서 30인으로 확대 조정함.(안 제14 조제2항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○ 운영위원회 위원을 15명에서 30 ○ 시민단체나 NGO등 여러 분야에서 명으로 늘리는 이유는 무엇인지? 활동하는 분들이 참여하여 다양하 고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 것입니다. ○ 위원 구성안에 보며는 평생학습과 ○ 평생학습의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관련 없는 단체나 위원들이 포함 관련단체나 전문가 영입을 위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? 것입니다. ○ 운영위원회 위원수가 많으면 이익 ○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고 단체도 있고 이권에 개입되는 사람 생각하며 현행 15인의 위원으로는 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의 각기 다 회의를 하다보면 불참하는 경우도 른 의견을 조율하기가 매우 어렵다 있고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? 수렴하는 차원에서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. ○ 당연직을 줄이고 위촉직을 늘리면 ○ 당연직들은 모두 평생학습과 관련

있는 분들로 줄이기는 곤란합니다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안 되는지요?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수정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평생학습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	안	제 245 호	
번	호	세 240 보	
의	결	2004 F 17	
연월일		2004. 5. 17	

제안년월일: 2004년 5월 15일

제 안 자:행정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평생학습센터 소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 중 평생교육분야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현행 조례 제20조에 이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중 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불합리 하므로 삭제
-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하지 않더라도 현재 위원수로 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므로 위원수를 현행대로 존치

2. 주요골자

- 평생학습센터 소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 중 평생교육분야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삭제(안 제13조제3호)
-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하지 않더라도 현재 위원수로 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므로 위원수를 현행대로 존치(안 제14조제2항)

부천시평생학습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부천시평생학습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3조(자격기준)제3호를 삭제한다.

안 제14조(운영위원회 구성)제2항중 "30인 이내의"를 "15인 이내의"로 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	정	안	수	정	안
제13조(자격기준)평생학습센 터 소장 및 직원의 자격기 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	제13조(자 	격기준) 		제13조(자	·격기준) 	
1. 소장은 교육학 또는 평 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 상 자격이 있는 자	생교육 취득한	분야 석 후 평신	· 또는 평 사학위를 교육분야 있는 자	1.(개정인	라 과 같음)
	<u>이거나</u> 교육분(한 후 ³	교육학 :	또는 평생 남위를 취득 분야 12년			
2.(생 략)	2.(현행과	· 같음)		2.(개정인	<u></u> 라 같음)
<u> <신 설></u>		육분야에 로 정할	<u>대하여는</u> <u>것</u>	<u>〈삭</u> 제	<u>></u>	
제14조(운영위원회 구성)	제14조(운	영위원회	기 구성)	제14조(운	영위원회	구성)
①(생 략)	①(현행	과 같음)	①(개정	안과 같	<u> </u>
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	②			②(현행	과 같음)	<u>)</u>
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						
한 <u>15인 이내의</u> 위원으로	<u>30인</u>	이내의-				
구성한다.						
③~④(생 략)	3~4(현행과	같음)	3~4([개정안괴	같음)

부천시평생학습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	제 245 호
번 호	•
의 결	2004. 5. 17
연 월 일	(제112회)

제출년월일 : 2004. 5. 6. 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평생학습센터소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우수하고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,
- 운영위원회 위원을 30인까지 확대하여 전문가등이 참여하도록 하는 등,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 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가. 평생학습센터소장의 자격기준을 현행 라급(8급공무원 수준)에서 가급(5급공무원 수준)으로 상향 조정함(안 제13조제1호)
- 나. 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을 15인에서 30인으로 확대 조정함 (안 제14조제2항)

[수정안 포함]

부천시평생학습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평생학습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소장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평생교육분야 9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이거나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평생교육분야 12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자격기준)평생학습센터 소	제13조(자격기준)
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	
각호의 1과 같다.	
1. 소장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	1. 소장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
분야 석사학위 이상 자격이	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
있는 자	평생교육분야 9년이상 경력이
	있는 자 이거나 교육학 또는
	평생교육분야 학사학위를 취
	득한 후 평생교육분야 12년이
	<u>상 경력이 있는 자</u>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